



FMD,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대한한돈협회



137-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 ☎(02)581-9751 ~ 4, 8 / Fax581-9768 ~ 9 담당:농가지원부

문서번호 한돈협지 310-13호

시행일자 2022. 6. 22.

수신 임원 및 지부(회)장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	
	시간			
	번호		공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요 사항 안내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지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윤준병의원의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고 본회는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조문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불임과 같이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추진 경과 등을 불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주요 경과 및 사항. 끝.

사 단 법 인 대한한돈협회장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주요 경과 및 사항

- 2022. 06, 대한한돈협회 -

□ 진행 경과

-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축산냄새 관리를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냄새저감시설 의무화 및 슬러리 피트 관리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 발표 시부터 협회에서 강하게 조문 개정 요구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구분	정부 발표(안)	협회요구 사항	최종 개정(안)
시 행 령	양돈장 신·증축시에 사육시설 밀폐 의무화	축산법 시행규칙 27조의 2의 제2호에 따른 변경 허가시에만 적용	<u>신·증축시에 사육시설 밀폐 의무화</u> (증축시 증축 면적에 대해서만 해당)
	가설건축물(인큐베이터, 가금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육금지	가설건축물 중 가축양육실(인큐베이터 등) 법 적용 제외요구	<u>해당 조항 삭제</u>
	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	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신규 허가시에만 적용	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 - 악취저감설비 음수용시설 추가
시 행 규 칙	슬러리 피트 상시 80%이내 관리, 슬러리 피트 비우기 의무화 (연 1회 이상)	관리 의무 삭제	<u>슬러리 피트 상시 80%이내 관리(액비순환시스템 설치시 적용 제외)</u> , 슬러리 피트 비우기 의무화 (연 1회 이상)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의무		<u>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 의무 삭제</u>